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8가단52685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래영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6.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9. 체결된 증여 계약을 8,480,8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80,8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2013. 10. 2. 기준 10,006,146원 및 그중 9,479,780원에 대한 2013. 10.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2016. 5. 26.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나. C은 대구지방법원 2013개회40539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4. 4. 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2017. 5. 29.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은 위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그 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2016. 5. 26. 채권양도를 변경사유로 하여 2016. 9. 1.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C의 배우자인데, C은 2014. 6. 9.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다시 대구지방법원 2018개회50470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9. 5. 2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2021. 1. 26.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위 1.의 나.항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무렵 C의 재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로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7년 5, 6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내역을 열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년 5, 6월경 C의 재산 처분행위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1.의 가.항 기재 채권액에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8,480,898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이었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게 되는 점과 이후 2017. 5. 29. 회생절차가 폐지될 때까지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들어 C의 사해의사를 부인하고, 피고가 선의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따른 채무의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C이 채무 탕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C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해의사의 추인 및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인 및 추정을 뒤집고 C의 사해의사를

부인하거나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부인 및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2014. 6. 25. 채권최고액 1억 9,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1.의 나.항 개인회생 사건 당시 1억 9,000만 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부동산의 가액도 위 1억 9,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위 1.의 가.항에서 인정한 이 사건 채권액에서 8,480,898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억 9,000만 원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채권의 남은 금액 8,480,989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8,480,9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9. 체결된 증여 계약을 8,480,89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480,8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975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 17540.3㎡

대지권의 종류 : 1,2 소유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0337분의 43.99181

(· 이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 현 소유자)

